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2월 8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3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3조(보수의 적용범위) 모든 공무직근로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「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61조(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) 관련

[별표2] 공무직근로자 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 기준 중 특수업무수당(특정업무 수행수당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지급기준	비고
특수업무수당	특정업무 수행수당 : 월 8만원	예산, 결산, 계약, 감사, 노사, 보상업무, 경영평가, 안전·보건관리업무 실무담당 직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